##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23

발의연월일: 2021. 4. 16.

발 의 자:김선교·정운천·구자근

김예지 · 성일종 · 이철규

김석기 · 윤창현 · 박대수

이만희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림청에서는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를 개발· 보급하고 있으며, 현재 전국 7곳에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, 기존에 보급한 임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 등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장비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개발·보급한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, 부대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제18조의11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의1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·보급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, 부대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18조의11(임업의	기계화)	(생	제18조의11(임업의 기계화) ①
략)			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		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
			발・보급한 임업기계장비의 유
			지보수 및 관리, 부대시설의 설
			치・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
			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
			<u>다.</u>